

뉴질랜드의 공공정보 활용 및 관리 동향과 시사점

문 정 옥*

1. 개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기술의 핵심적 요소인 정보의 생성, 유통, 개방,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 1990년대에 PC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촉발된 데이터 및 정보의 확산은 이제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수준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및 정보의 확장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다양한 센싱 정보,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정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다양한 스마트 기기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개발 수요 등의 확산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개방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축적만 하던 공공정보를 이제는 민간에 개방·공유함으로써 공공정보의 활용이 극대화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미 세계 주요 정보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 (02)570-4366, jwmoon@kisdi.re.kr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화 선진국 중 하나인 뉴질랜드의 공공정보 활용 및 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뉴질랜드의 공공정보 활용 동향

뉴질랜드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UN, ITU, WEF, EIU 등의 주요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의 국가정보화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정보화 선진국 중의 하나이다.

〈표 1〉 뉴질랜드의 정보화 수준

	순위	대상국가	조사기관, 최근 발표일
전자정부발전지수	13	193	UN, 2012. 2
ICT 발전지수	12	152	ITU, 2011. 9
네트워크준비지수	14	142	WEF, 2012. 4
디지털경제지수	10	70	EIU, 2010. 6

자료: UN(2012), ITU(2011), WEF(2012), EIU(2010)

뉴질랜드 정부는 2000년부터 국가행정위원회(SSC : State Service Commission) 소속의 전자정부기획단(e-Government Unit)을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뉴질랜드의 공공정보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에 ‘Enabling Transformation: Strategy for e-Government’를 발표하여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하였고, 2010년에는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Government ICT’ 전략 계획을 통해 투명하고 개방된 정부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정보화 전략인 ‘NZ Government ICT Strategy’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한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 통합 및 연계된 서비스 제공, 조달 업무 등 정부 비즈니스 역량 강화, 효율적인 정보통신기술의 관리 방안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 정부는 공공정보의 개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NZGOAL(New Zealand Government Open Access and Licensing Framework)’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공공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공공정보의 활용 정도를 더욱 촉진시키고,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그리고 ‘NZGOAL’을 통해 특정 부처가 특정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 타 부처의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2010년에 발표한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Government ICT’ 전략의 일환으로 ‘Declaration on Open and Transparent Government’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공공정보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관리를 위한 새로운 원칙을 수립했다. 공공정보의 개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공공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하고,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더욱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공공정보의 관리 원칙은 첫째, 공공정보는 개방 및 공유되어야 하고, 둘째,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셋째,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넷째, 합리적인 요금이 부과되며, 다섯째, 기술의 발전과 시간이 경과해도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섯째,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일곱째, 개방된 공공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Declaration on Open and Transparent Government’의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뉴질랜드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정책의 중간 추진결과 보고서 격인 ‘The 2012 Report on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n Open and Transparent Government’¹⁾

1) 본 보고서는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The Data and Information Re-use Chief Executives’ Steering Group’에 의해 작성되었다.

가 지난 2012년 6월에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Declaration on Open and Transparent Government’ 선언문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개 대상을 36개 공공기관들로 선정하였고,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고위 관리직을 공공정보 관리자(Data Champion)로 임명하고, 각 기관의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총괄 업무를 일임했다. 36개 기관 중 75%인 27개 기관이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그중 20개 기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공공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NZGOAL’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개방하는 공공정보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기관도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기관들은 공공정보의 일반적인 공개에만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인 ‘NZGOAL’이 아직까지는 정부기관에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기관도 4곳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뉴질랜드 기관들은 공공정보의 접근 창구인 ‘data.govt.nz’를 통해 보유한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NZGOAL’과 마찬가지로 ‘data.govt.nz’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기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정보 공개 및 재활용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 부족, 둘째, 공공정보 저장 형식의 표준화 미흡, 셋째, 공공정보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자원 부족, 넷째, 책임성 전가 등의 행정조직문화, 다섯째, 정보를 공개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드는 시간 등의 비용, 여섯째, 공공정보의 수요 파악의 어려움 등을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다. 한편, 공공정보 개방 및 재활용의 촉진방안으로는 공공정보의 저장소 및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공공정보 형식의 표준화, 정확성 제고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결 어

지금까지 뉴질랜드 정부의 공공정보 활용 및 관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의 디지털화는 물론,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방식의 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뉴질랜드 정부기관의 공공정보 개방 및 재활용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 제고와 공공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통신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기술의 진화, IT와 타 기술과의 융·복합의 일반화, 유비쿼터스 기술의 고도화와 사물통신의 현실화, 스마트폰이 촉발시킨 모바일 기술의 확산, 그리고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의 플랫폼화 등은 새로운 정보화의 가능성을 확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사회의 모습인 융합사회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정국환 외, 2011).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정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과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뉴질랜드 정부의 공공정보 활용과 관리 노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각양각색의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는 공공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전환하는 작업과 함께,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 정보의 품질 제고, 이용자(공공, 민간)의 접근성 확보,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정국환·문정욱·유지연 (2011), “IT실용화를 통한 국가정보화 선진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Ⅲ)”,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12-01,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011 국가정보화 백서』.

Archives New Zealand (2009). “Digital Continuity Action Plan Introductory Brochure”. New Zealand Government.

EIU (2010). “Digital economy rankings 2010”.

ITU (2011).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1”.

New Zealand Government (2011). “Declaration on Open and Transparent Government”.

_____ (2012). “2012 Report On Agency Adoption of the New Zealand Declaration on Open and Transparent Government”.

New Zealand State Service Commission (2006). “Enabling Transformation: A Strategy for E-Government 2006”.

_____ (2010a). “New Zealand Government Open Access and Licensing Framework”.

_____ (2010b). “Open Government Data in New Zealand”.

UN (2012).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2”.

WEF (2012).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1~2012”.